

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(안)

의안 번호	196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1995. 12. .
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○ 제 안 이 유

우리시 환경오염요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 위해예방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분석 검토하고 대비책강구에 따른 연구 및 자문을 위함.

○ 주 요 골 자

- 위원회구성 : 13인 이내(안 제3조)
 - 환경 분야 전문교수, 사회단체 대표자, 시의원, 관련공무원
- 환경관리에 따른 연구 및 자문 기능 규정(안 제4조)
 - 환경관련 시책연구, 심의 및 조정
 - 환경보전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
 - 시의 환경기준 설정등 환경보전과 관련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- 회의소집 : 분기1회(필요시 수시) (안 제8조)

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 (안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사천시 환경문제 연구 및 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설치) 위원회는 사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설치 운영한다.

제3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시장이며, 부위원장은 사회환경국장이 된다.

③위원은 환경분야 전문교수, 사회단체 대표자, 시의회의원등 지역인사와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.

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.

제4조 (기능)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오염 요인의 효율적 관리와 사전분석검토 및 위해예방등 환경관리 계획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연구 및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
1. 환경관련 시책연구,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환경보전을 위한 범시민운동등 지원에 관한 사항
3. 시의 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